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 비교연구*

이 형 근

경찰대학교

조 은 경[†]

동국대학교

이 미 선

동양대학교

형사소송법은 조서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각종 통제장치를 두고 있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 권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왜곡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정정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참여자들을 네 가지 조건(진실·조작정정, 진실·생략정정, 거짓·조작정정, 거짓·생략정정)에 할당하고 조서정정 수행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진실집단이 거짓집단보다 왜곡정정을 잘 한다는 사실, 모든 집단이 생략정정보다 조작정정을 더 잘 한다는 사실, 정정실패는 중요성 착오에 의한 경우보다 발견실패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진실한 피의자와 거짓된 피의자 간 왜곡정정 수행의 차이는 생략정정보다 조작정정에서 더 크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변호사 참여자들을 두 가지 조건(조작정정, 생략정정)에 할당하고 조서정정 수행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변호사의 경우에도 생략정정보다 조작정정을 더 잘 한다는 사실, 정정실패는 중요성 착오에 의한 경우보다 발견실패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연구 3은 대학생 참여자와 변호사 참여자의 정정점수를 비교·분석하여, 양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논의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제정 수사준칙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모의 신문상황 연출 등 연구의 의의와 생태학적 타당도 부족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였다.

주요어 : 조서왜곡, 피의자, 변호인, 조서정정, 비교연구

* 본 연구는 이형근(2016)의 박사학위 논문 제3장의 연구2를 수정·보완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및 수사준칙 제정에 따라 연구의 결과를 재해석한 것임.

† 교신저자: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E-mail: ekjo@dongguk.edu

범죄수사는 혐의유무의 명확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등을 위해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주의 및 적정절차 원리 등에 입각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는 법원의 활동이다(신동운, 2014, pp. 3-4). 한편,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바(제307조), 이는 과학적 증거에 의해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는 요청에서 수립된 원칙으로(신동운, 2014, p. 1105),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인 실체적 진실주의 구현에 봉사하는 개념이다(이재상, 2014, p. 524). 그러나 사실의 인정에는 객관적 성격을 띠는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주관적 색채를 배제할 수 없는 인적 증거, 즉 피의자 등의 진술도 사용된다(신동운, 2014, p. 1098). 특히, 형사소송법은 제312조 이하에서 '구두'로 '직접' 법원에 보고되지 않는 각종 진술 및 서류, 즉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증거의 대표적 예다(손동권, 신이철, 2016, pp. 587-590). 따라서 조서제도는 '내용적'으로 객관성이 낮은 진술을 '절차적'으로 객관성이 낮은 전문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어서 그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권영범, 2012; 김현숙, 2008, pp. 51-61; 박노섭, 2004; 조정래, 2011; 하태훈, 박노섭, 조기영, 2012, pp. 22-26).

그러나 입법자들은 실체적 진실주의와 소송경제의 조화를 이유로 조서제도를 존치하되,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해 각종 통제장치를 두기로 하였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 p. 636). 여기에는 변호인의 신문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서의 열람 및 정정(제244조 제2항, 제3항), 신문과정의 영상녹화(제244조의2), 수사과정의 기록(제244조의4)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제장치에도 불구하고 조서제도의 부적정한 운용, 특히 조서의 왜곡 문제가 온전히 근절되지 못했음이 각종 판례, 사례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

603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이형근, 조은경, 2014). 특히, 형사소송법은 조서의 초안이 완성되면 이를 출력하여 피의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내용 및 기재에 대한 이의나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제244조 제2항, 제3항), 신문참여 변호인에게도 의견진술권, 이의제기권 및 조서열람권을 부여하고 있으며(제243조의2 제3항, 제4항), 증거절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위반하여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바(제308조의2, 제312조 제1항, 제3항), 조서의 왜곡 문제가 상존하는 이유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한편,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¹⁾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²⁾은 신문참여 변호인의 역할, 특히 조서열람 및 의견진술권을 대폭 강화하였다(제14조).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및 제정 수사준칙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는 변호인에 의한 조서 왜곡 통제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칭 '오산시장 너물수수 사건'(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경우와 같이 변호인이 참여한 신문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각종 왜곡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조서검토로 조서의 왜곡이 온전히 여과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의 조서 열람 및 정정 규정'에 착안하여 피의자의 조서정정 역량을 확인하고(연구 1), '변호인의 신문참여 규정'에 착안하여 변호인의 조서정정 역량을 확인한 후(연구 2),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양자의 조서정정 수행역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연구 3).

관련 법제의 개관

1) 2020. 2. 4. 일부개정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2) 2020. 10. 7. 제정 대통령령 제31089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제정 수사준칙').

조서의 열람 및 정정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³⁾ 때부터 조서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해오고 있으며, 2007년⁴⁾ 및 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조서제도를 수정하였다. 특히, 2007년의 개정을 통해 조서 작성 부분을 대폭 손보았다. 가령, 구 형사소송법⁵⁾은 조서의 열람 및 정정에 관하여 단지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묻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제244조 제2항, 제3항), 그 위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두지 않았던 반면(제312조),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조서의 열람 및 정정에 관한 조항을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묻도록 구체화하고(제244조 제2항, 제3항), 증거절에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는 요건을 신설하여(제312조), 그 위반을 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신동운, 2014, p. 269).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조서의 열람 및 정정은 피의자신문 및 조서작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고(이형근, 2020a, pp. 152-155), 그 절차의 결락 또는 방식 위반 등은 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사유 중 하나로 정립되었다(이형근, 2020a, p. 49; 이형근, 2020b; 이형근, 백운석, 2019). 그렇다면 ‘피의자의 조서열람 - 기재 및 사실 동일성에 대한 수사관의 확인 질문 - 이에 대한 피의자의 이의 또는 의견 진술 - 이의 또는 의견의 조서 기재 - 피의자의 자필 확인’ 등 조서에 대한 비교적 촘촘하고 정밀한 점검의 절차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왜곡이 제대로 여과되지 못하는 이유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이래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장기간 허용되지 않았다(이영돈, 2014;

이형근, 2020a, p. 24; 이형근, 2020c). 변호인 신문참여의 변천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부분적 허용, 판례에 의한 점증적 인정, 형사소송법에 의한 법제화로 요약된다(이형근, 2020a, p. 24; 이형근, 2020c). 가령, 경찰청은 1999년부터, 대검찰청은 2002년부터 각각 자체 시책으로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허용했고⁶⁾, 2003년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였으며(대법원 2003. 11. 11. 자 2003모402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모든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자 2000헌마138 결정).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시책, 판례,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 신문참여제도를 법제화하였다. 가령, 신문참여 변호인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조서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43조의2 제3항, 제4항).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둬으로써(제243조의2 제4항), 신문참여 변호인에게 조서의 왜곡을 감시 및 통제할 수단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신문참여 변호인에 의한 조서의 왜곡 감시 및 통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법률문의한인 일반인과 다른 또는 전문적인 조서정정 역량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서의 왜곡유형

조작과 생략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세칭 ‘오산시장 뇌물수수 사건(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309동 성폭행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3) 1954. 9. 23. 제정 법률 제341호 형사소송법.

4) 2007. 6. 1. 일부개정 법률 제8496호 형사소송법.

5) 2007. 5. 17. 타법개정 법률 제8435호 형사소송법.

6) 1999. 6. 5. 자 경찰청 수사 61110-1601 ‘피의자 신문서 변호인 참여지침’, 2002. 12. 30. 자 대검찰청 기획 611000-183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은 세간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 조서 왜곡 사례다. 전자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발생한 조서의 왜곡으로 인해 현직 시장이 1심 및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된 사안이고, 후자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발생한 조서의 왜곡으로 인해 청소년 4명이 구속되었다가 검찰수사 단계에서 석방된 사안이다.

이형근과 조은경(2014)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사례 10건의 조서와 영상녹화물을 비교·분석하여, 조서에 각종 왜곡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조작 형태의 왜곡과 생략 형태의 왜곡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왜곡 정도 분석에서는 조서 상 문답과 영상녹화물 상 문답의 양적 '차이'가 평균 80%에 달한다는 사실, 이 중에서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문답의 차이, 즉 '왜곡'이 평균 20%에 이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왜곡 유형 분석에서는 문답전환(34%), 문답생략(33%), 답변의 미묘한 조작(14%), 답변생략(7%), 질문조작(6%), 문답추가(5%), 답변의 뚜렷한 조작(1% 미만) 등의 왜곡이 조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⁷⁾. 한편, 이형근과 백윤석(2019)은 이상의 왜곡 유형 등에 대한 일반인과 변호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조작 형태의 왜곡과 생략 형태의 왜곡 모두가 조서의 증거로서의 자격(증거능력)뿐만 아니라 증거로서의 가치(증명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작과 생략의 정정

이형근과 조은경(2014)의 연구에서 유의할 점

7) '답변생략'은 답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를, '문답생략'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생략하는 경우를, '답변의 뚜렷한 조작'은 답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를, '답변의 미묘한 조작'은 답변의 취지, 뉘앙스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를, '질문조작'은 질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를, '문답추가'는 실제로 주고받지 않은 질문과 답변을 기재하는 경우를, '문답전환'은 실제로 질문한 내용을 답변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이형근, 조은경, 2014).

은 연구자들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조서가 공히 피의자 등의 열람 및 정정을 거친 것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조서에 조작 형태의 왜곡보다 생략 형태의 왜곡이 더 많았던 이유는 수사관이 후자의 왜곡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피의자 등이 후자의 왜곡을 더 적게 발견 또는 정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양자 모두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사관이 후자의 왜곡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추정은 동일한 해악을 적극적 작위에 의해 야기하는 경우보다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 야기하는 경우에 도덕적 죄책감이 덜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부작위 편향(ommission bias)' 현상(Spranca, Minsk, & Baron, 1991)과 조서작성 시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의 왜곡이 더 빈번함을 확인한 선행연구(이형근, 2016, p. 50)로써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반면, 피의자 등이 후자의 왜곡을 더 적게 발견 또는 정정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Wilcock, Bull과 Milne(2008)는 과거에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을 아무런 단서 없이 인출하는 '회상과업(recall)'과 과거에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과 현재 제시된 것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재인과업(recognition)'은 다소 다른 심리적 처리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회상과업과 재인과업 간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자가 후자보다 어렵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일반적인 견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Freund, Brelsford, & Atkinson, 1969; MacDougall, 1904; Postman, 1950; Postman, Jenkins, & Postman, 1948). 조서에서 조작을 발견하여 정정하는 과업(예: A → B)과 생략을 발견하여 정정하는 과업(예: nothing → B)은 각각 재인과업 및 회상과업과 비슷한 면이 있다. 하지만 조서를 열람하고 거기에서 왜곡을 찾아 정정하는 과업은 기본적으로 재인과업에 가깝다. 조작 찾기

이든 생략 찾기이든 왜곡 찾기는 공히 자신이 앞서 진술한 내용에 대한 기억과 현재 읽고 있는 내용 간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과업이기 때문이다.

Wells(2008)는 신문 과정에서 용의자의 진술 생략(숨김) 전략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방법으로 '역방향 점검(backward reaching)'을 제안한 바 있다. 역방향 점검은 '진술을 끝까지 청취한 후 모든 진술을 역방향으로 재점검하여 생략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역방향 점검은 특정 진술을 청취하는 시점에서는 다른 진술의 생략 여부를 즉시 알 수 없으므로 모든 진술을 청취하고 종합한 후에 생략된 부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역방향 점검은 '수사관의 관점'에서 용의자의 진술 생략을 찾는 과업의 곤란성 및 그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도구이나, 역으로 '피의자의 관점'에서는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에서 생략을 찾는 과업의 곤란성 등을 설명해줄 이론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의자의 진실성

수사기관에서 신문을 받는 피의자 중에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피의자도 있는 반면, 허위의 진술을 하는 피의자도 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가령, 2018년을 기준으로 입건된 피의자 중 40.1%는 기소 처분을, 50.9%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검찰청, 2019, pp. 226-227).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실성은 정서와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Easterbrook, 1959; Vrij, 2008), 그 결과 각종 과업 수행에서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Deffenbacher, Bornstein, Penrod, & McGorty, 2004; Vrij, Fisher, Mann, & Leal, 2010). 그렇다면 피의자의 진실성이 조서정정 성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통상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은 서로 다른 정서적·인지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Ekman, O'Sullivan, & Frank, 1999; Inbau, Reid, Buckley, & Jayne, 2001; Vrij, 2008),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범죄수사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Ekman et al., 1999; Inbau et al., 2001; Vrij, 2008; Vrij et al., 2010). 진실성의 정서적 효과와 인지적 효과를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방식의 효과성 및 타당성에 관한 논의와는 별론으로, 조서의 열람 및 정정은 이러한 심리적 효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향유하고(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수사관은 피의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그 진술을 조서에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피의자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열람하고 정정할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다만, 현실에서 피의자가 진실성의 정서적 효과와 인지적 효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오히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수사에 관한 각종 과업의 수행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Leo & Davis(2010)는 진실한 용의자이든 거짓된 용의자이든 신문을 받게 되면 일정한 정도의 불안, 두려움, 고민, 피로,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Ekman 등(1999)과 Inbau 등(2001)은 통상 거짓된 용의자가 경험하는 정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진실한 용의자가 경험하는 정서의 강도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Easterbrook(1959)는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등의 부적 정서는 정서 자체뿐만 아니라 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나아가, Deffenbacher 등(2004)은 스트레스가 회상뿐만 아니라 재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Ofshe와 Leo(1997a, 1997b)는 스트레스가 용의자로 하여금 신문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

고, 신문에서 최선(예: 무죄증명)을 다하기보다 최악(예: 구속)을 면하려는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피의자의 진실성 차이로 인해 야기된 정서적 차이는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관한 각종 과업의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Vrij(2008)는 진실한 용의자이든 거짓된 용의자이든 신문상황에 처하게 되면 일정한 정도의 인지적 부하(cognitive load)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이때 거짓된 용의자가 경험하는 인지적 부하의 강도가 진실한 용의자가 경험하는 인지적 부하의 강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 이유로 관련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 자체의 인지적 어려움(Vrij, 2008), 자신의 진실성에 대한 낮은 확신도(DePaulo & Kirkendol, 1989; Kassin & Gudjonsson, 2004),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언행도 관찰해야 하는 부담(Buller & Burgoon, 1996; Schweitzer, Brodr, & Croson, 2002), 내면의 역할극에 따르는 인지 부하(DePaulo et al., 2003), 진실의 회상을 억누르는 데 따르는 인지 부하(Spence et al., 2001), 준비된 거짓 대본 활성화에 따르는 인지 부하(Gilbert, 1991; Walczyk et al., 2005)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거짓된 용의자는 길게 이야기하기, 자세히 이야기하기, 빨리 이야기하기 등 신문에 관한 거의 모든 과업에서 진실한 용의자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

진실성의 처치 및 신문상황의 연출

본 연구는 ‘피의자의 진실성’ 및 ‘조서의 왜곡(유형)’을 처치하는 등 신문상황을 연출하여 양자가 ‘피의자의 조서정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후자가 ‘변호인의 조서정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므로, 이에 관한 방법론적 토대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조서의 왜곡은 관련 판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및 선행연구(이형근, 백윤석, 2019; 이형근, 조은경, 2014) 등을 참고하여 어렵지 않게 처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진실성 처치의 방법론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에는 실험환경 하에서의 진실성 처치, 신문상황 연출 등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졌다. 상대적으로 저위험 상황(low stake)에 해당하는 모의 신문상황 하에서는 고위험 상황(high stake)인 실제 신문상황에서와 같은 수준의 동기, 정서, 인지 상태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험환경 하에서도 진실성 처치가 가능하고 의미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령, Hartwig(2005)은 전략적 증거사용(Strategic Use of Evidence) 기법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고, A 집단에게는 어떤 상점에 방문하여 타인의 가방에서 돈을 절취하는 모의 범죄에 가담하도록 하고, B 집단에게는 같은 상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구경하면서 우연히 타인의 가방을 만지도록 한 후, 모든 참여자에게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Vrij 등(2008)은 역순회상(recall in reverse order) 기법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고, A 집단에게는 타인의 지갑에서 10파운드를 절취하는 모의 범죄에 가담하도록 하고, B 집단에게는 커넥트포(Connect Four)라는 게임을 하도록 한 후, 모든 참여자에게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 두 연구에서 A 집단에 속한 참여자는 거짓을, B 집단에 속한 참여자는 진실을 말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를 ‘모의 범죄 조건’, ‘알리바이 조건’ 등에 할당한 후, 공히 신문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진실성 처치 및 신문상황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가설

본 연구는 조서의 열람 및 정정에 있어 피의자의 진실성 및 조서의 왜곡유형이 피의자의 조서정정 수행에 갖는 효과를 확인하고, 조서의 왜곡유형이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에 갖는 효과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역량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서로 다른 진실성(진실·거짓)을 처치하고, 이들이 열람할 조서에는 서로 다른 유형의 왜곡(조작·생략)을 처치한 후, 왜곡정정 수행에 있어서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거짓집단보다 진실집단의 왜곡정정 수행이 우수할 것이다. 둘째, 생략정정보다 조작정정의 수행이 우수할 것이다. 셋째, 진실집단과 거짓집단의 왜곡정정 수행 차이는 생략정정보다 조작정정에서 더 클 것이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적용한 사건개요, 신문상황 및 실험재료 등을 차용하여 조서의 왜곡유형이 변호인의 조서정정에 갖는 효과를 확인하고, 연구 3에서는 연구 1과 연구2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변호인의 경우에도 생략정정보다 조작정정의 수행이 우수할 것이다. 둘째, 피의자의 조서정정 수행역량과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역량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연구 1: 피의자의 진실성과 조서의 왜곡유형이 피의자의 조서정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

총 116명의 대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에게 연

구 및 보상 계획(범죄수사 절차에 관한 특강)을 공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현한 대학생들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33명(28.4%), 여성이 83명(71.6%)이었고, 연령은 20대가 110명(94.8%), 30대가 5명(4.3%), 40대가 1명(0.9%)이었다. 참여자 중 조서의 열람 및 정정 과업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또는 직업 등을 경험한 참여자는 없었으며, 다만 피의자신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가 1명 있었다.

연구방법

피의자의 진실성과 조서의 왜곡유형이 피의자의 조서정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116명의 참여자를 신문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후 조서에서 조작을 정정하는 조건(진실·조작정정 집단), 신문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후 조서에서 생략을 정정하는 조건(진실·생략정정 집단), 신문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후 조서에서 조작을 정정하는 조건(거짓·조작정정 집단), 신문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후 조서에서 생략을 정정하는 조건(거짓·생략정정 집단)에 각각 29명씩 무선으로 할당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연구재료에 설정된 사건개요와 신문 이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5. 9. 24. 13:30경 충남 소재 대학교 A관 매점 옆 휴게장소에서 지갑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같은 시각 A관 1층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이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관이 지갑 절취에 가담한 학생(58명) 및 비디오를 본 학생(58명) 모두를 대상으로 신문을 할 것이다. 이때 모든 학생들은 지갑 절취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비디오를 보았다고 진술해야 한다.

연구재료

실험재료는 비디오 클립,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2, 예상문답 시나리오, 정정요청서, 설문지 등으로 하였다. 비디오 클립은 진실 집단의 참여자들에게 알리바이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처치하는 데 사용된 실험재료다. 비디오 클립은 '그 남자가 아내에게(A Good Husband, 2009)'라는 영화 중 일부를 발췌하여 5분 23초 분량으로 제작하였다. 영상의 발췌 및 편집에는 무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반디컷 1. 2. 5. 106 (K)'를 이용하였다. '그 남자가 아내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영화인데, 이전에 실험 재료인 비디오 클립을 본 참여자가 있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 영화를 실험 재료로 삼았다. 사후 확인 결과, 이 영화를 시청한 참여자는 없었다.

피의자신문조서 1, 2는 각각 조작 및 생략을 처치하는 데 사용된 실험재료다. 먼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에 수록된 피의자신문조서 서식을 활용하여 조작과 생략이 없는 원본 조서를 제작하였다. 원본조서에는 36개 문답을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이 원본 조서 상 36개의 문답에 각각 20개의 조작 및 생략을 처치하여 조작정정 집단용 피의자신문조서 1과 생략정정 집단용 피의자신문조서 2를 제작하였다. 문답의 내용이 조서정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개의 조작 및 생략은 동일한 문답 내에 처치하였다. 조작과 생략을 처치한 부분 및 처치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예상문답 시나리오는 참여자들의 답변을 최대한 정형화하여 연구의 수행 및 결과의 분석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답변을 정형화하지 않으면, 거짓 집단에 속한 참여자들은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게 될 것이고, 진실 집단에 속한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답변이 제각각으로 이루어져 집단 간 비교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예상문답 시나리오는 조작과 생략이 처치되지 않은 원본 조서를 내용의 변경

이 없는 범위에서 축약하여 제작하였다.

정정요청서는 정정요청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 및 정정요청 란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정정요청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 부분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읽고 '피의자가 진술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있으면 아래의 정정요청 란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점, 정정요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3페이지에서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누락된 진술을 기재할 필요하다).", "5페이지에서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조서에는 ×××라고 기재되어 있다(따라서 ××× 부분을 ○○○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정정할 부분과 정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점, 실험에서 고득점을 얻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다른 참여자의 정정 내용을 볼 필요가 없고 단지 최선을 다해서 정정요청을 하면 된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유의사항 아래에 20행의 공간으로 구성된 정정요청 란을 두었다.

설문지는 정정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질문 및 참여자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정정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질문은 총 2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제1문은 실제로 문답한 내용과 조서의 내용 간 차이를 모두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3지선다형(발견실패, 중요성 착오, 기타) 문항으로 하였고, 제2문은 기타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자유서술형 문항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자에 관한 질문은 성별, 연령, 피의자신문을 받아 본 경험의 유무 등에 관한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절차

실험절차는 참여자 안내, 비디오 시청 또는 모의 절도사건 가담, 예상문답 시나리오 숙지, 피의자신문 받기, 정정요청서 작성, 디브리핑 및 설문 순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 안내는 연구 취지 소개, 참여 동의서 작성, 유의점 설명 순으로 5분간 진행하였다. 연구 취지 소개는 '조서열

표 1. 피의자신문조서 내 조작 및 생략 처치 내역

연번	처치 내역
1	남자와 여자가 <u>식탁→거실</u> 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남자와 여자는 말다툼을 했습니다.
2	거실 한 가운데 긴 <u>소파→탁자</u> 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옷이며 물건들이 많아서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3	사람 키보다 조금 더 <u>작은→큰</u> 인형이었어요. 무슨 만화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같이 생겼어요.
4	둘이서 사진을 찍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역에 도착하면 <u>전화→문자</u> 를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5	<u>베이지색→검은색</u> 후드 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6	글쎄요. 좀 느끼하게 생겼어요. 얼굴은 <u>긴→둥근</u> 편이고, 피부는 하얀 편이었던 것 같아요.
7	여자는 남자에게 집에서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왜 아직 온천에 가지 않았는 <u>냐고 묻자</u> 여자는 열차시간을 잘 못 봤다며 12시 <u>반→정각</u> 에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8	먼저 여자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했던지 <u>답요→베개</u> 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9	여자는 <u>빨래를→신문</u> 을 집어서 남자에게 던졌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10	여자가 남자에게 작년에 여행 얘기를 꺼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냐며 따졌습니다. <u>그 때 일이 어제→오늘</u> 꿈에서 나타났다고도 했습니다.
11	카키색 코트에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u>목도리→마스크</u> 를 하고 있었습니다.
12	그리고 머리끝이 <u>바깥쪽→안쪽</u> 으로 조금 뺨쳐 있었어요. 안경 같은 걸 쓰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13	남자가 먼저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여자가 토마토는 손도 안 댔네 하자, 남자가 <u>토마토 싫어해→배 불러</u> 했습니다.
14	정확하지는 않지만 핑크색, 초록색 같은 것들이 <u>연하게→진하게</u> 들어가 있었어요. 하의는 짙은 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15	사이즈가 좀 커보였습니다. 목이 <u>깊게→조금</u> 파여 있는 옷이었어요.
16	여자는 토마토를 들고 계속 남자를 따라 다녔고 남자는 거실 <u>소파→바닥</u> 에 가서 다시 담배를 피웠습니다. 결국 남자가 토마토를 집어서 여자의 얼굴에 붙였습니다.
17	여자는 토마토를 떼서 먹으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u>주방으로 가면서 차 마실래</u> 했고, 남자는 <u>응→아니</u> 했습니다.
18	여자가 어머 들켰네 하며 차 두 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자가 거실 <u>텔레비전→오디오</u> 옆에 있던 스크랩북에서 신문기사를 떼려고 하자 남자가 관두라고 했습니다.
19	남자가 차를 마시다가 잔에 다시 벨어 버렸습니다. 남자가 이거 뭐냐고 묻자 여자가 <u>당근→우영</u> 차라고 했습니다.
20	두 사람이 소파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둘이 <u>등을 마주대고→얼굴을 마주보고</u> 얘기를 나눴어요.

주. 처치 설명: A진술→B진술로 표시된 부분은 'A진술을 B진술로 조작하였음'을 의미하고, 진술(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진술(밑줄)을 생략하였음'을 의미함.

람 과정에서 왜곡이 정정되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라는 정도의 일반적 설명으로 같음하였으며, 왜곡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 등 편향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세부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다. 유의점 설명 단계에서, 진실 조건의 참여자들에게는 본 실험에서 참여자는 진실한 피의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 먼저 5분 가량의 비디오를 시청하게 될 것이라는 점, 이후 절도 사건에 관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신문에서는 절도를 한 사실이 없고 비디오를 보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다는 점 등을 안내해 주었다. 반면, 거짓 조건의 참여자들에게는 본 실험에서 참여자는 거짓된 피의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 먼저 A관 1층 매점 옆 휴게장소에서 절도사건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 이후 절도사건에 관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신문에서는 절도를 한 사실이 없고 비디오를 보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해 주었다. 아울러, 모든 조건의 참여자들에게 신문에 앞서 변호인이 제공한 예상문답 시나리오가 제공될 것이라는 점, 신문 과정에서는 예상문답 시나리오에 따라 진술해야 한다는 점, 이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진술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오기 또는 증감·변경할 것이 있으면 빠짐없이 정정요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 조서에 필요한 메모나 표시를 해도 무방하지만 정정요청은 반드시 정정요청서에 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주었다.

진실성 처치는 진실 집단과 거짓 집단으로 나누어 7분간 실시하였다. 먼저, 비디오 시청은 진실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에게 진실성을 처치하는 과정으로, 연구자와 연구 협조자 2의 통제 하에 수행되었다. 참여자들에게 집중해서 비디오를 시청할 것을 당부하고 실험 장소의 조명을 끈 후, 앞서 실험재료로 제작한 비디오 클립을 무료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곰플레이어 V 2. 2. 64. 5210'을 이용하여 재생해 주었다. 다음으로, 모의 절도사건 가담은 거짓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에게 거짓말의 기반을 처치하는 과정으로, 연구 협조자 1의 통제 하에 수행되었다. A관 1층 매점 옆 휴게장소에 1만원권 지폐 3매와 신용카드 3매가 든 지갑을 놓아둔 후 참여자들로 하여금 지갑을 절취하도록 하였다.

예상문답 시나리오 숙지는 모든 참여자들에

게 앞서 실험재료로 제작한 예상문답 시나리오를 제공한 후 신문에 대비하여 그 내용을 3분간 숙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이때 참여자들에게 신문과정에서는 예상문답 시나리오에 따라 진술해야 한다는 점, 신문이 종료되면 예상문답 시나리오를 회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었다.

피의자신문 받기는 예상문답 시나리오에 기재된 문답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연구자가 질문을 하고 참여자가 답변하기를 36회 반복하는 방식으로 10분간 수행하였다. 현실성이 낮은 실험(신문) 방식으로 인해 자칫 참여자들이 실험상황을 놀이로 여기거나 문답에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문 직전에 참여자들에게 질문듣기와 답변하기에 최대한 몰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신문 종료 후에는 예상문답 시나리오를 회수하였다.

정정요청서 작성은 조작된 조서를 열람할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에게는 조작이 처치된 피의자신문조서 1을 제공하고, 생략된 조서를 열람할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에게는 생략이 처치된 피의자신문조서 2를 제공한 후, 정정요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순서로 10분간 진행하였다. 먼저, 정정요청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을 읽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정정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음을 고지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여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정요청서의 정정요청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디브리핑 및 설문은 모든 참여자들로 하여금 정정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질문과 참여자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5분간 수행하였다. 먼저, 정정요청서 작성을 완료한 참여자들에게 표 1을 보여주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작과 생략을 처치하였음을 알려준 후, 정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성별, 연령, 피의자신문을 받아 본 경험의 유무 등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편, 디브리핑 및 설문에 이어 실시된 특강

시간을 통해 진실성 처치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을 해소함으로써 모의 범죄에 가담한 거짓 조건 참여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모도하였다.

코딩절차

실험절차에서 얻은 116건⁸⁾의 정정요청서를 코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표 1을 기본적인 코딩 기준으로 한다. 둘째, 올바른 정정요청만을 코딩(+하고 잘못된 정정요청은 코딩(-하지 않는다)). 즉, 잘못된 정정요청은 정정점수로 인정하지 않을 뿐 감점하지는 않는다. 수사실무에서 피의자의 잘못된 정정요청은 수사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피의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코딩 기준이다. 셋째, 코딩은 정정요청 누락 또는 잘못된 정정요청은 0으로, 올바른 정정요청은 1로 각각 한다. 넷째, 정정할 사항을 다소 부정확하게 적었다라도 정정할 부분을 정확히 적었다면 올바른 정정요청으로 본다. 피의자가 조작이나 생략의 세부적 내용을 모르더라도 조작이나 생략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이의제기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왜곡이 정정되거나 조서가 완성되지 못할 것(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거부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코딩 기준이다. 그림 1(a)는 이와 같은 코딩 기준을 적용하여 거짓·조작정정 집단의 참여자 12가 제출한 정정요청서에서 조작을 코딩한 예시이고, 그림 1(b)는 거짓·생략정정 집단의 참여자 12가 제출한 정정요청서에서 생략을 코딩한 예시이다.

그림 1(a)의 조작 코딩 예시를 보면 거짓·조작정정 집단의 참여자 12는 표 1에 따라 20개의 조작이 처치된 피의자신문조서 1을 열람한 후 8개의 조작을 찾아 정정요청 하였고, 나머지 12개의 조작은 정정요청 하지 않아, 8점을 취득하였다. 그림 2(b)의 생략 코딩 예시를 보면 거짓·생략정정 집단의 참여자 12는 표 1에 따라 20개의 생략이 처치된 피의자신문조서 2를 열람한 후 4개의 생략을 찾아 정정요청 하였고, 나머지 16개의 생략은 정정요청 하지 않아, 4점을 취득하였다.

코딩은 사전 훈련을 받은 연구자 및 연구 협조자 1이 코딩 기준에 따라 116건의 정정요청서에서 올바른 정정요청을 코딩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사전 코딩 훈련은 ‘코딩 기준’ 공동설계 및 숙지 2시간, ‘왜곡정정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정정요청서를 활용한 코딩 연습 5회 등을 통해 실시하였다. 코딩은 24개(약 20%)의 표본에 대한 복수(교차) 코딩, 평가자 간 일치도 확인, 나머지 92개(약 80%)의 표본에 대한 단독 코딩 순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4개의 집단에서 각각 6개씩의 총 24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두 명의 코더가 복수 코딩을 하였다. 코더 1과 코더 2가 코딩한 표본별 정정 총점에 대하여 평가자 간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ICC = .998, p < .001$). 다음으로, 나머지 92개의 표본은 코더 1과 코더 2가 46개씩 단독으로 코딩하였다.

연구결과

진실성과 왜곡유형의 효과

대학생 참여자의 진실성과 조서의 왜곡유형이 조서정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 참여자 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진실성의 주효과는 다음과 같았다. 왜곡유형(조작·생략)과 무관하게 진실 집단은 평균 8.466개(표준편차 = 4.118)의 왜곡을 정정요청 한 반면, 거짓 집단은 평균 7.328개(표준편차 = 3.219)의

8) 피의자신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1명 있었으나, 이 참여자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한 경우에도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t(114) = -.780, p = .437$. 이에 참여자 116명 전원의 데이터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9) 올바른 정정요청은 왜곡(조작·생략)된 부분을 정정요청 하는 경우이고, 잘못된 정정요청은 왜곡되지 않은 부분을 정정요청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4페이지 기억극에서 긴박감 → 소파.

○ 5페이지 남자의 인성특성은 검은색 후드티 아닌 헤어리얼 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 6페이지 남자의 변종함은 등근편이 아닌 긴편.

○ 6페이지에서 ~~이~~ 여자는 그시 강박이 아니라 그시 반에 가도 된다.

○ 6페이지 남자는 머리를 보고 당황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 6페이지 여자는 신우가 아니라 빨래를 남자에게 던졌습니다.

○ 9페이지 우연 → 당근리.

○ 8페이지 남자와 여자는 등을 머리대고 얘기를 나눕습니다.

그림 1(a). 거짓·조작정정 집단 참여자 12의 정정요청서에 대한 조작코딩 예시

○ 5페이지에서 남자는 베이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고 강박한 사실이 있는데 계면은 그 내용이 정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베이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 6페이지에서 ~~이~~ 베이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 6페이지에서 남자가 머리를 흔들어 강박한 사실이 있는데 계면은 그 내용에 정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자가 머리를 흔들은 것이 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남자가 머리를 흔들은 것이 정정되어 있지 않다.

○ 6페이지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차 머리를 흔들어 강박한 사실이 있는데 계면은 그 내용에 정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여자가 남자에게 머리를 흔들어 강박한 것이 정정되어 있다.

○ 9페이지에서 남자가 우연하게 당근을 머리대고 얘기를 나눕는다.

그림 1(b). 거짓·생략정정 집단 참여자 12의 정정요청서에 대한 생략코딩 예시

표 2. 대학생 참여자의 진실성과 조서의 왜곡유형에 따른 조서정정 점수 평균

진실성	왜곡 유형	N	M ^a (SD)	95% CI	
				LL	UL
진실	조작	29	11.172 (3.296)	10.048	12.296
	생략	29	5.759 (2.911)	4.635	6.883
	총계	58	8.466 (4.118)	7.671	9.260
거짓	조작	29	8.552 (3.418)	7.428	9.676
	생략	29	6.103 (2.512)	4.979	7.227
	총계	58	7.328 (3.219)	6.533	8.122
총계	조작	58	9.862 (3.581)	9.067	10.657
	생략	58	5.931 (2.701)	5.136	6.726
	총계	116	7.897 (3.724)	-	-

주. a. 왜곡유형 중 조작은 '피의자가 진실한 내용과 다르게 기록한 것'을 의미하고, 생략은 '피의자가 진실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 b. 평균은 조작정정 또는 생략정정 점수의 평균을 의미하며, 조작정정 점수와 생략정정 점수의 만점은 각각 20점임.

왜곡을 정정요청 하였다(표 2 참고). 아울러, 진실 집단의 왜곡정정 점수와 거짓 집단의 왜곡정정 점수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12) = 4.023, p < .05, \eta^2 = .035$. 둘째, 왜

곡유형의 주효과는 다음과 같았다. 진실성(진실·거짓)과 무관하게 조작정정 집단은 평균 9.86개(표준편차 = 3.581)의 조작을 정정요청 한 반면, 생략정정 집단은 평균 5.93개(표준편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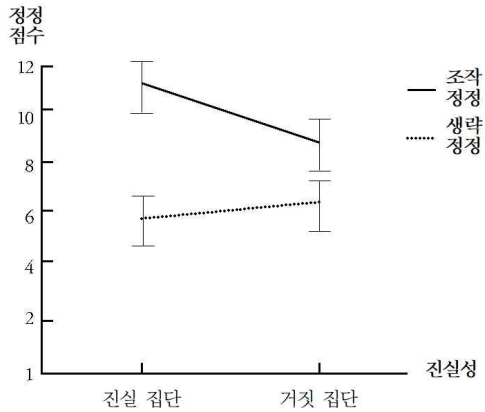


그림 2. 대학생 참여자의 왜곡정정에 있어 진실성과 왜곡유형의 상호작용

2.701)의 생략을 정정요청 하였다(표 2 참고). 아울러 조작정정 점수와 생략정정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1, 112) = 48.061, p < .001, \eta^2 = .300$.

셋째, 진실성과 왜곡유형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1, 112) = 6.831, p < .05, \eta^2 = .057$ (그림 2 참고). 주효과 분석 결과, 진실성의 경우 진실 집단과 거짓 집단의 왜곡정정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F(1, 116) = 2.749, p = .100, \eta_p^2 = .024$. 반면, 왜곡유형의 경우 조작정정 점수가 생략정

정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116) = 44.555, p < .001, \eta_p^2 = .281$.

추가분석

정정실패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정실패의 이유는 왜곡 사실 자체를 발견하지 못한 ‘발견실패’가 69.8%(81명), 발견한 왜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중요성 착오’가 10.3%(12명), ‘기타 사유’가 19.8%(23명)로 나타났다. 정정실패의 이유에 대한 자유서술형 응답의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다.

연구 2: 조서의 왜곡유형이 변호인의 조서정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

총 45명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연구 및 보상 계획(연구결과 및 조서정정 시 유의사항 피드백)을 공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현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31명(68.9%), 여성이 14명(31.1%)이었고, 연령은 20대가 2명

표 3. 정정실패 이유에 대한 대학생 참여자의 자유서술형 응답

조건	응답
진실 · 조작정정	“위낙 사소한 부분이 바뀌어 있어서 발견하기 어려웠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확실히 틀린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다.”
진실 · 생략정정	“문장이 아예 빠져 있어서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동영상 때문인지 시나리오를 읽어도 동영상의 흐름이 더 생각났다.”
거짓 · 조작정정	“너무 자연스럽고 어색한 부분이 없어서 잘 발견하지 못했다.” “영상을 못 보고 시나리오만 읽으니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거짓 · 생략정정	“문장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었는데도 문장의 흐름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발견하지 못했다.” “형용사가 들어간 부분이 특히 기억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공통 응답	“시간이 부족했다.”

(4.4%), 30대가 39명(86.7%), 40대가 4명(8.9%)이
있으며, 평균 변호사 경력은 3년(표준편차 =
1.729)이었다.

연구방법

조서의 왜곡유형이 변호인의 왜곡정정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참여
자를 신문에 참여한 후 조작된 조서를 정정하는
조건(조작정정 집단)에 23명, 생략된 조서를 정
정하는 조건(생략정정 집단)에 22명씩 무선으로
할당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의 생
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
으며, 연구제료에 설정된 사건개요와 피의자신
문 참여 이전의 상황은 연구 1의 그것과 동일
하다.

연구제료

실험제료는 영상녹화물, 피의자신문조서 1 피
의자신문조서 2, 정정요청서, 설문지 등으로 하
였다. 영상녹화물은 연구 1의 원본 피의자신문
조서 상 신문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9분 53초
간 신문상황을 연출하고, 이를 영상녹화시스
템으로 녹화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모의 신문
상황의 연출에서는 연구 협조자 1이 수사관 역
할을, 연구 협조자 2가 피의자 역할을 각각 하
였고, 녹화는 경찰청 및 대검찰청 등에서 사용
중인 △△社의 영상녹화시스템으로 하였다. 피
의자신문조서 1, 2 및 정정요청서는 연구 1에서
제작한 것과 동일한 것을, 설문지는 연구 1에서
제작한 것에 변호사 경력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
는 등 일부 수정을 가한 것을 각각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실험절차는 참여자 안내, 영상녹화물 시청,
정정요청서 작성, 디브리핑 및 설문 순으로 진
행하였다. 참여자 안내는 연구 취지 소개, 동의
서 작성, 유의점 설명 순으로 5분간 진행하였다.
연구 취지 소개는 '조서열람 과정에서 왜곡이

정정되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라는 정도의
일반적 설명으로 같음하였으며, 왜곡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 등 편향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세
부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다. 유의점으로는 본
실험에서 참여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 신문과정
에의 참여는 10분 가량의 영상녹화물을 보는 방
식으로 할 것이라는 점, 신문과정 참여가 끝나
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피의자가 진술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오기 또는 증감·
변경할 것이 있으면 빠짐없이 정정요청서에 기
재해야 한다는 점, 피의자신문조서에 필요한 메
모나 표시를 해도 무방하지만 정정요청은 반드시
정정요청서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해 주
었다.

영상녹화물 시청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실제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영상녹화물을 시청할 것을 당부한 후,
앞서 실험제료로 제작한 영상녹화물을 △△社의
영상녹화시스템 재생기능으로 10분여간 재생해
주었다. 정정요청서 작성, 디브리핑 및 설문 등
의 절차는 연구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
다. 다만, 조서를 열람하고 자신(변호사)이 진술
한 것과 다른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피
의자)이 진술한 것과 다른 부분을 찾는 상황
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코딩절차

실험절차에서 얻은 45건의 정정요청서를 연구
1에서 적용한 것과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코딩하였다. 즉, 연구자인 코더 1이 23건(조작
정정요청서 12건, 생략 정정요청서 11)의 정정요
청서를, 연구 협조자 1인 코더 2가 22건(조작·
생략 정정요청서 각 11건)의 정정요청서를 각각
코딩하였다. 다만, 연구 1과 동일한 코딩 기준을
적용했으므로, 사전 코딩 훈련 및 평가자 간 일
치도 확인 등은 생략하고, 곧바로 단독 코딩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왜곡유형의 효과

조서의 왜곡유형이 변호사 참여자의 왜곡정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작정정 집단은 평균 10.609개(표준편차 = 3.434, 최대값 = 3, 최소값 = 15)의 조작을 정정요청 한 반면, 생략정정 집단은 평균 5.364개(표준편차 = 3.672, 최소값 = 0, 최대값 = 17)의 생략을 정정요청 하였다(표 5 참고). 아울러, 참여자들의 조작정정 점수와 생략정정 점수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43) = 4.951, p < .001, d = 1.239$.

추가분석

정정실패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정실패 이유는 왜곡 사실 자체를 발견하지 못한 ‘발견실패’가 80.0%(36명), 발견한 왜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중요성 착오’가 6.7%(3명), ‘기타 사유’가 13.3%(6명)로 나타났다. 정정실패의 이유에 대한 자유서술형 응답의 주요 내용은 표 4와 같다.

연구 3: 조서의 왜곡유형과 정정자의 신분이 조서정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연구 3은 연구 1과 연구 2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두 연구에서 수집한 161개의 표본을 일반인이 조서에서 조작을 정정하는 조건(일반인·조작정정 조건)에 58개, 일반인이 조서에서 생략을 정정하는 조건(일반인·생략정정 조건)에 58개, 변호사가 조서에서 조작을 정정하는 조건(변호사·조작정정 조건)에 23개, 변호사가 조서에서 생략을 정정하는 조건(변호사·생략정정 조건)에 22개씩 무선으로 할당한 후, 조건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왜곡유형과 신분(일반인·변호사)의 효과

조서의 왜곡유형과 정정자의 신분이 조서정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원 참여자 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참여자들은 평균 10.5개(표준편차 = 4.131) 가량의 조작을 정정요청 하고, 평균 5.8개(표준편차 = 2.985) 가량의 생략을 정정요청 하였다(표 5 참고). 아울러, 왜곡유형에 따른 왜곡정정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1, 157) = 63.411, p < .001, \eta^2 = .288$. 둘째, 일반인 참여자들은 평균 7.9개(표준편차 = 3.724) 가량의 왜곡을 정정요청 하였고, 변호사 참여자들은 평균 8.0개(표

표 4. 정정실패 이유에 대한 변호사 참여자의 자유서술형 응답

조건	응답
조작정정	“전체적인 스토리에 집중을 해서 세부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원래의 진술이 기억나지 않았다.” “진술한 대로 기재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생략정정	“틀린 것 찾기에만 익숙해서 누락 부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어서 빠른 진술을 다 기억할 수 없었다.” “메모를 하면서 청취하였는데, 모두 메모할 수는 없었다.”
공통 응답	“시간이 부족했다.”

표 5. 조서의 왜곡유형과 정정자의 신분에 따른 조서정정 점수 평균

신분	조작			생략			총계	
	N	M (SD)	95% CI	N	M (SD)	95% CI	N	M (SD)
일반인	58	9.862 (3.581)	[9.011, 10.713]	58	5.931 (2.701)	[9.258, 11.960]	116	7.897 (3.724)
변호사	23	10.609 (3.433)	[5.080, 11.960]	22	5.364 (3.672)	[3.982, 6.745]	45	8.044 (4.400)
총계	81	10.074 (4.131)	[9.437, 11.034]	80	5.775 (2.985)	[4.836, 6.458]	161	7.938 (3.911)

준편차 = 4.400) 가량의 왜곡을 정정요청 하였다(표 5 참고). 아울러, 일반인 참여자와 변호사 참여자 간의 왜곡정정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1, 157) = .024, p = .877, \eta^2 = .000$. 셋째, 왜곡유형과 정정자의 신분 간 상호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F(1, 157) = 1.300, p = .256, \eta^2 = .008$.

신분에 따른 정정실패 이유

정정자의 신분에 따라 왜곡정정 실패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chi^2(2, N = 161) = 1.692, p = .429$. 즉 일반인과 변호사 참여자 공히 발견실패로 인해 왜곡정정을 하지 못한 경우가 중요성 착오로 인해 왜곡정정을 하지 못한 경우보다 현저히 더 많았다(표 6 참고).

표 6. 정정자의 신분에 따른 정정실패 이유 빈도

신분	실패이유 N(%)			총계
	발견실패	중요성착오	기타	
일반인	81 (69.8)	12 (10.3)	23 (19.8)	116 (100.0)
변호인	36 (80.0)	3 (6.7)	6 (13.3)	45 (100.0)
총계	117 (72.7)	15 (8.3)	29 (18.0)	161 (100.0)

논 의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나, 사실의 인정 및 구속 여부의 결정 등에는 주관적 성격을 띠는 진술증거도 사용된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이하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구두’로 ‘직접’ 법원에 보고되지 않는 각종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입법자들은 형사소송법에 조서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각종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피의자의 조서 열람 및 정정에 관한 조항(제244조 제2항, 제3항)과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조항(제243조의2 제3항, 제4항)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통제장치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왜곡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각종 판례, 사례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이형근, 조은경, 2014). 이에 본 연구는 피의자의 진실성, 조서의 왜곡 유형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조서정정 수행역량 및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역량을 확인한 후, 양자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진실한 피의자가 거짓된 피의자보다 왜곡정정을 잘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상대적으로 거짓된 피의자 등이 수사 및 일상적 과업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인다는 선행연구(Ekman et al., 1999; Inbau et al., 2001; Leo & Davis, 2010; Vrij, 2008; Vrij et al., 2010)의 결과를 일반화할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왜곡정정 과업의 수행에 있어 진

실성의 효과크기가 크지 않다는 점은 진실한 피의자에게도 조서 왜곡에 대응할 현저한 저항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 결과의 해석과 활용에 있어 특히 유의할 점은 왜곡정정 과업의 수행에 있어 진실성의 효과를 조서작성의 전략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진실성의 효과를 수사 및 신문에 활용하는 것은 효과성 및 적법성 검토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인 반면, 이를 조서작성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피의자는 생략정보보다 조작정정을 더 잘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조서에는 조작 형태의 왜곡보다 생략 형태의 왜곡이 더 많다는 선행연구(이형근, 조은경, 2014)의 결과를 ‘피의자 요인’의 관점에서 뒷받침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조서에 조작 형태의 왜곡보다 생략 형태의 왜곡이 더 많은 이유에 후자의 왜곡을 더 적게 발견 또는 정정하는 피의자의 역량 또는 경향이 포함됨을 시사해 준다. 또한, 이 결과는 생략찾기의 과업 특수성을 제안한 선행연구(Wells, 2008; Wilcock et al., 2008)의 결과를 일반화할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정정실패의 이유에는 사실적 요인(발견실패)과 법리적 요인(중요성 착오)이 포함되고, 전자가 후자보다 정정실패의 더 큰 원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변호인 등 법률전문가의 신문참여 및 조서열람 등이 갖는 실질적 효과를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결과의 도출에 사용된 연구방법론상의 제약(설문 후 빈도분석)으로 인해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후속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왜곡정정에 있어 진실성과 왜곡유형 간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진실한 피의자에게는 조작 형태의 왜곡보다 생략 형태의 왜곡이 더 치명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조작정정에 있어서는 진실한 피의자의 수행

이 거짓된 피의자의 수행보다 현저히 더 우수한 반면, 생략정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유형의 왜곡 통제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변호사의 경우에도 생략정보보다 조작정정을 잘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조서에는 조작 형태의 왜곡보다 생략 형태의 왜곡이 더 많다는 선행연구(이형근, 조은경, 2014)의 결과를 ‘변호인 요인’의 관점에서 뒷받침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조서에 조작 형태의 왜곡보다 생략 형태의 왜곡이 더 많은 이유에 후자의 왜곡을 더 적게 발견 또는 정정하는 변호인의 역량 또는 경향이 포함됨을 시사해 준다. 또한, 이 결과는 생략찾기 과업의 비즉시성 및 곤란성(Wells, 2008, Wilcock et al., 2008)이라는 요인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그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변호사의 경우에도 법리적 요인(중요성 착오)보다 사실적 요인(발견실패)이 정정실패의 더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연구 1에서 확인된 일반인의 정정실패의 이유와도 경향을 같이 하는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신문참여 및 조서열람 등이 갖는 실질적 효과를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결과의 도출에 사용된 연구방법론상의 제약(설문 후 빈도분석)으로 인해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후속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일반인의 조서정정 수행역량과 변호사의 조서정정 수행역량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사실적 요인이 법리적 요인보다 조서정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바이지만, 진실성의 정서적·인지적 효과를 고려할 때 결과의 해석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변호사의 법리적 강점을 인지적 약점이 상쇄하였기 때문에 변호사 참여자와 대학생 참여자 간 왜곡정정 수행에 차이가 없었던 것이라는 잠정적 설명을 제시하고, 보다 정확한 원인의 확인은 후속연구의 몫으로 삼고자 한다.

여덟째,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조서 상 왜곡정정 실패요인에 관한 입체적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① 완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왜곡이 잔류하는 원인에는 수사관(작성자) 요인뿐 아니라 피의자 및 변호인(정정자) 요인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종 피의자신문조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수사관 요인과 피의자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왜곡의 정도를 고찰한 선행연구(이형근, 조은경, 2014)의 결과를 보완함과 동시에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또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조서의 왜곡 통제가 수사관, 피의자 및 변호인 등 다각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② 최종적으로 완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잔류하는 왜곡은 생략 형태가 주류를 이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수사관은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의 왜곡을 더 많이 하고(이형근, 2016, p. 50), 정정자는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의 왜곡을 더 못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적극적 조작뿐만 아니라 소극적 생략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서의 왜곡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③ 통상 조서정정에 있어 법리적 지식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일반인과 변호사 모두가 사실적 요인(발견실패)의 영향이 법리적 요인(중요성 착오)의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법리적 지식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조서작성 과정 상 적법절차 감시 및 통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형사증거법에 관한 해석론의 측면에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

호인이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 특히 실질적 진정성립(피의자 등이 진술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 간의 동일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피의자 및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역량을 실험연구의 방법으로 확인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 진실성 처치 및 조서정정 상황 연출 등의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조서정정 환경 하에서 벌어지는 각종 현상에 대한 연구(예: 자백 여부에 따른 조서정정 수준 비교, 최종에 따른 조서정정 수준 비교 등)의 수행에 적용 가능한 처치 및 연출 예시를 제공한 점, 왜곡정정의 코딩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정정의 절차를 거친 조서 등에 대한 실증적·법리적 평가기준(예: 조서의 정확성 및 증명력 평가 등)을 제공한 점 등에 있어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특히, 종래에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연구는 주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변호인에 대한 통지·신청(김동률, 이 훈, 2016; 김대웅, 2009), 참여신청에 따른 신문중단(윤영철, 2005; 천진호, 2011), 신문참여의 제한(김두원, 2019; 김정연, 2019), 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정진연, 2006; 조도현, 2009), 신문참여 변호인의 역할(이동희, 2009; 이상문, 2010), 참여환경 및 편의(박찬운, 2015; 이영돈, 2014) 등을 고찰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신문 및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감시 및 통제라는 관점에서 변호인의 신문참여제도에 접근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임에 틀림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의 신문참여 상황은 범죄수사 관련 요인이 변호인의 변론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연구(예: 피의자의 자백이 변호인의 변론전략에 미치는 효과, 수사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변호인의 대처방식 비교 등)의 수행에 있어 참고 가능한 연구방법론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제약이 병존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신문상황을 연출함에 있어 예상문답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는

데, 일반적으로 -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고, 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신문 대비를 조력해주는 경우 이외에는 - 신문에 임하는 피의자에게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제공되는 일은 드물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조서의 내용을 진술한 내용(verbal) 및 시나리오 내용(text) 두 가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실에서는 피의자들이 조서의 내용을 진술한 내용 한 가지와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문답을 정형화하기 위해 채택한 부득이한 방법이었으나, 연구의 생태학적 타당도 및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실제 조서 열람 및 정정 과정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더 상세한 정정고지문을 제공함으로써(‘생략된 진술과 조작된 진술이 있을 가능성’ 및 ‘그 정정방식’까지 설명), 정정점수가 다소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정정실패의 이유를 사실적 요인(발견실패)과 법리적 요인(중요성 착오)으로 나누고, 전자의 효과가 후자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중요성 착오가 반드시 법리적 요인과 연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가령, 일반인 참여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참여자 중 일부도 알리바이(비디오 내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법리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 수 있다. 제약점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정정점수의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후속연구를 통한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서의 왜곡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박노섭, 2004; 엄명용, 2004, pp. 71-73; 이 윤, 2015, p. 3; 조정래, 2011),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조서 왜곡의 정정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이형근, 조은경, 2014; Leo & Davis, 2010; Vrij, 2008; Vrij et al., 2010; Wells, 2008; Wilcock et al., 2008).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¹⁰⁾, 현 시점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구체화하는 제정 수사준칙의 재정비를 통해 조서의 왜곡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효과적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제정 수사준칙에 피의자의 열람 및 정정 절차를 강화하는 조항, 이 조항을 변호인의 열람 및 정정에 준용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본 연구가 진술증거제도의 개선과 후속연구의 수행에 미력을 보탬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이형근은 현재 경찰대학교 경찰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신문기법, 조서왜곡, 진술증거에 대한 실증적·법리적 평가이다.

조은경은 현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수사면담, 진술분석, 행동분석, 반사회적 행동이다.

이미선은 현재 동양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성폭력 피해자 수사면담, 진술신빙성 판단, 목격자 증언, 거짓말 탐지이다.

참고문헌

권영범 (2012). 현행 조서관련 규정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한 현행 규정의 검토와 대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저

10) 이에 관하여는, 영상녹화제도의 보완 및 강화(박노섭, 2004; 조정래, 2011), 부적법한 사전신문의 차단 또는 최소화(법무·검찰개혁위원회, 2018, p. 87) 등 간접적인 개선방안과 조서 열람 및 정정 절차의 보완 및 강화(이형근, 2020a, pp. 286-288) 등 직접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스티스, 131, 202-242.
- 김동률, 이 훈 (2016). 피의자신문의 문제점과 변호인참여의 필요성.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23(2), 395-414.
- 김두원 (2019). 한국형 미란다 원칙의 재정립과 수사 실무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21(2), 197-230.
- 김대웅 (200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형사판례연구*, 17, 411-447.
- 김정연 (2019).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헌법학연구*, 25(4), 1-36.
- 김현숙 (2008).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대검찰청 (2019). 2019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박노섭 (2004). 수사절차상 신문과 비디오 녹화 제도. *형사정책*, 16(1), 103-144.
- 박찬운 (2015).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 대한변협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권과정의*, 453, 57-75.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018).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백서: 활동과 성과. 서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제10권: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연구보고서·참고자료. 서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손동권, 신이철 (2016).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3판. 서울: 세창출판사.
- 신동운 (2014). 신형사소송법 제5판. 서울: 법문사.
- 엄명용 (2004).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수집 효율화 방안: 진술녹화제도 도입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와 피의자의 태도조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영철 (2005)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한 소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정당성과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6(1), 55-92.
- 이동희 (2009). 한국의 피의자신문절차와 그 개혁. *형사법연구*, 21(4), 135-152.
- 이상문 (2010). 형사소송법에서 권리의 구체적인 의미. *경찰법연구*, 8(2), 147-168.
- 이영돈 (201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47, 261-282.
- 이 윤 (2015). 수사관의 용의자 면담유형 분류 및 수사면담유형 평가척도의 개발.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상 (2014). 형사소송법 제9판. 서울: 박영사.
- 이형근 (2016). 피의자신문조서 왜곡의 형성과 영향: 조서의 작성, 정정 및 평가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형근 (2020a).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에 관한 연구: 신문, 조서 및 영상녹화의 운용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형근 (2020b).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 실질적 진정성립 및 특신상태 요소의 증거법적 기능에 관한 전망. *형사정책연구*, 31(2), 149-181.
- 이형근 (2020c).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하위 법령·규칙 비교연구. *법조*, 69(3), 83-118.
- 이형근, 백윤석 (2019).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방향: 왜곡에 대한 일반인과 변호사의 인식 비교연구. *경찰학연구*, 19(4), 133-164.
- 이형근, 조은경 (2014).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유형과 정도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4(2), 29-53.
- 정진연 (2006).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한계. *성균관법학*, 18(3), 633-660.
- 조도현 (2009). 수사절차상 변호인 참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16(2), 311-350.
- 조정래 (2011). 수사과정상 피의자진술을 현출하는 방법의 한계와 보완: 영상녹화물의 활용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36, 329-360.

- 천진호 (2011).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 제고 방안.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28(4), 365-385.
- 하태훈, 박노섭, 조기영 (2012).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수사 실무 개선 방안.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경찰청.
- Buller, D. B., & Burgoon, J. K. (1996). Interpersonal deception theory. *Communication theory*, 1(3), 203-242.
- Deffenbacher, K. A., Bornstein, B. H., Penrod, S. D., & McGorty, E. K. (2004). A meta analytic review of the effects of high stress on eyewitness memory. *Law and Human Behavior*, 28, 687-706.
- DePaulo, B. M., & Kirkendol, S. E. (1989). The motivational impairment effect in the communication of deception. In J. C. Yuille (Ed.), *Credibility Assessment* (pp. 51-70). Dordrecht, Netherlands: Kluwer.
- DePaulo, B. M., Lindsay, J. J., Malone, B. E., Muhlenbruck, L., Charlton, K., & Cooper, H. (2003). Cues to decep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1), 74-118.
- Easterbrook, J. A. (1959). The effect of emotion on cue util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66(3), 183-201.
- Ekman, P., O'Sullivan, M., & Frank, M. G. (1999). A few can catch a liar. *Psychological Science*, 10, 263-266.
- Freund, R. D., Brelsford Jr, J. W., & Atkinson, R. C. (1969). Recognition vs. recall: Storage or retrieval differences?.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21(3), 214-224.
- Gilbert, D. T. (1991). How mental systems believe. *American psychologist*, 46(2), 107-119.
- Hartwig, M. (2005). *Interrogating to detect deception and truth: Effects of strategic use of evidence*. PhD thesis, University of Gothenburg, Department of Psychology.
- Inbau, F. E., Reid, J. E., Buckley, J. P., & Jayne, B. C. (2001). *Criminal interrogation and confessions (4th Edition)*. Gaithersberg, MD: Aspen.
- Kassin, S. M., & Gudjonsson, G. H. (2004). The psychology of confession evide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ssu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 35-69.
- Leo, R. A., & Davis, D. (2010). From false confession to wrongful conviction: Seven psychological processes. *The Journal of Psychiatry & Law*, 38, 9-54.
- MacDougall, R. (1904). Recognition and recall. *The Journal of Philosophy, Psychology and Scientific Methods*, 1(9), 229-233.
- Ofshe, R., & Leo, R. A. (1997a). The social psychology of police interrogation: The theory and classification of true and false confessions. *Studies in Law, Politics and Society*, 16, 189-251.
- Ofshe, R., & Leo, R. A. (1997b). The decision to confess falsely: Rational choice and irrational action. *Denver University Law Review*, 74, 979-1122.
- Pinder, C. C. (2008). *Work Motivation in Organizational Behavior (2nd Edition)*. New York: Psychology Press.
- Postman, L. (1950). Choice behavior and the process of recognitio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63, 576-583.
- Postman, L., Jenkins, W. O., & Postman, D. L. (1948). An experimental comparison of active recall and recognitio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61, 511-519.
- Schweitzer, M. E., Brodt, S. E., & Croson, R. T. (2002). Seeing and believing: Visual access and the strategic use of de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3(3), 258-375.
- Spence, S. A., Farrow, T. F., Herford, A. E., Wilkinson, I. D., Zheng, Y., & Woodruff, P. W. (2001). Behavioral and functional anatomical correlates of deception in humans. *Neuroreport: For Rapid Communication of Neuroscience Research*, 12(13), 2849-2853.

- Spranca, M., Minsk, E., & Baron, J. (1991). Omission and commission in judgment and cho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 76-105.
- Vrij, A. (2008). *Detecting lies and deceit: Pitfalls and opportunities (2nd Edition)*. West Sussex, England: John Wiley & Sons, Ltd.
- Vrij, A., Fisher, R. P., Mann, S., & Leal, S. (2010). Lie detection: Pitfalls and opportunities. In G. D. Lassiter, & C. A. Meissner (Eds.), *Police interrogations and false confessions: Current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recommendations* (pp. 97-11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Vrij, A., Mann, S. A., Fisher, R. P., Leal, S., Milne, R., & Bull, R. (2008). Increasing cognitive load to facilitate lie detection: the benefit of recalling an event in reverse order. *Law and human behavior, 32*(3), 253-265.
- Walczyk, J. J., Schwartz, J. P., Clifton, R., Adams, B., Wei, M. I. N., & Zha, P. (2005). Lying person to person about life events: A cognitive framework for lie detection. *Personnel Psychology, 58*(1), 141-170.
- Wells, R. C. (2008). Art of Investigative Interviewing: Countering the Lie of Omission.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77*(1), 10-12.
- Wilcock, R., Bull, R., & Milne, R. (2008). *Witness identification in criminal cases: Psychology and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 차원고접수 : 2020. 10. 21.

수정원고접수 : 2021. 01. 01.

최종게재결정 : 2021. 01. 04.

A Comparative Study on Correction Performance of Suspects and Defense Counsels

Hyoung Keun Le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Eunkyung Jo

Dongguk University

Mi Sun Yi

Dongyang University

Despite suspects and defence counsels' correction power, distortions of paper records are still problematic.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distortion correction performance of the suspect and defence counsel. In study 1, total 116 undergraduate students were allocated into one of the four conditions ('innocent/commission', 'innocent/omission', 'deceptive/commission', 'deceptive/omission'), then asked to correct distortions. In study 2, total 45 lawyers were allocated into condition of 'commission' or 'omission', then asked to correct distortions. In study 3, the results of two preceding studies were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1) Innocent student groups found more distortions than deceptive groups. (2) Omission correction scores were lower than commission correction scores in all groups(students · lawyers). (3) The failures mainly result from the failures of finding rather than failures of estimating in all groups(students · lawyers). (4) The score differences between innocent and deceptive student groups were lower in omission correction than in commission correction. (5)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correction performances of laypersons and lawyers. In the conclus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ome improvement methods.

Key words : *distortion of paper record, suspect, defense counsel, correction of records, comparative study*